



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 623 호 2026. 4. 30.

고 시

- 순창군 고시 제2026-99호 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2단계) 시행계획 변경(1차) 승인 고시 1
- 순창군 고시 제2026-101호 순창읍 백산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 3
- 순창군 고시 제2026-102호 쌍치면 용전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4

공 고

- 순창군 공고 제2026-472호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입법예고 6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순창군 (편집 기획예산실)

순창군 고시 제2026-99호

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2단계) 시행계획 변경(1차) 승인 고시

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(2단계)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1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22일

순 창 군



1. 사 업 명 : 적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
 2. 위 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일원
 3. 사업목적 : 적성면 중심지에 기 구축된 거점시설과 그 외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배후마을에 다양한 문화·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
 4. 사업내용
 - 가. 지역역량강화 : 교육, 홍보마케팅, 컨설팅, 정보화, 경영지원 등
 - 나. 부 대 비 용 : 기본계획, 사업관리, 공사감리, 부대비 등
 5. 사업기간 : 2024년 ~ 2029년(6개년)
 6. 총사업비 : 2,000백만원(균특 1,400 도비 180, 군비 420)
 7. 시 행 자 : 순창군수(대행기관 :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)
 8. 시행계획도서 열람장소 : 순창군청 농촌활력과(전화 063-650-1758)
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어촌사업부(전화 063-650-7051)
- ※ 주요변경내용 : 낙찰차액 반영 및 주민위원회 의견에 의한 사업물량 변동(붙임 참조)

[붙임] 변경(1차) 증감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시행 계획 (당초)		시행 계획 (변경, 1차)		증(△)감 내역		비 고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
합계		2,000		2,000		0	
기초생활기반확충		-		-		-	
서비스 수용시설 개선	1식	-	1식	-	-	-	
농생활 서비스 공간개선	1식	-	1식	-	-	-	
지역역량강화사업		1,654		1,607		△47	
교육	1식	1,148	1식	1,171	-	23	
홍보·마케팅	1식	353	1식	302	-	△51	
컨설팅	1식	93	1식	74	-	△19	
경영지원	1식	60	1식	60	-	-	
관리비 등		346		393		47	
기본계획비	1식	114	1식	114	-	-	
공사관리비	1식	197	1식	230	-	33	
사업관리비	1식	7	1식	8	-	1	
기타부대비	1식	28	1식	41	-	13	

순창군 고시 제2026-101호

순창읍 백산지구 개간사업 준공 고시

『농어촌정비법』 제11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『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』 제9조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30일

순창군수

1. 사업의 목적	개간사업(밭작물 재배)	
2. 사업의 위치	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2-1번지	
3. 사업시행자	성명	문 * *
	주소	순창군 장류로 000, 0000
4. 지적/시행면적	4,990m ² / 4,990m ²	
5. 사업소요비용	7,550,000원	
6. 사업기간	2025. 6. 4. ~ 2026. 3. 13.	
7. 사업효과	농가소득 창출	
8. 이의신청	순창군청(경제산업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☎063-650-1836)	

순창군 고시 제2026-102호

쌍치면 용전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·고시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105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·고시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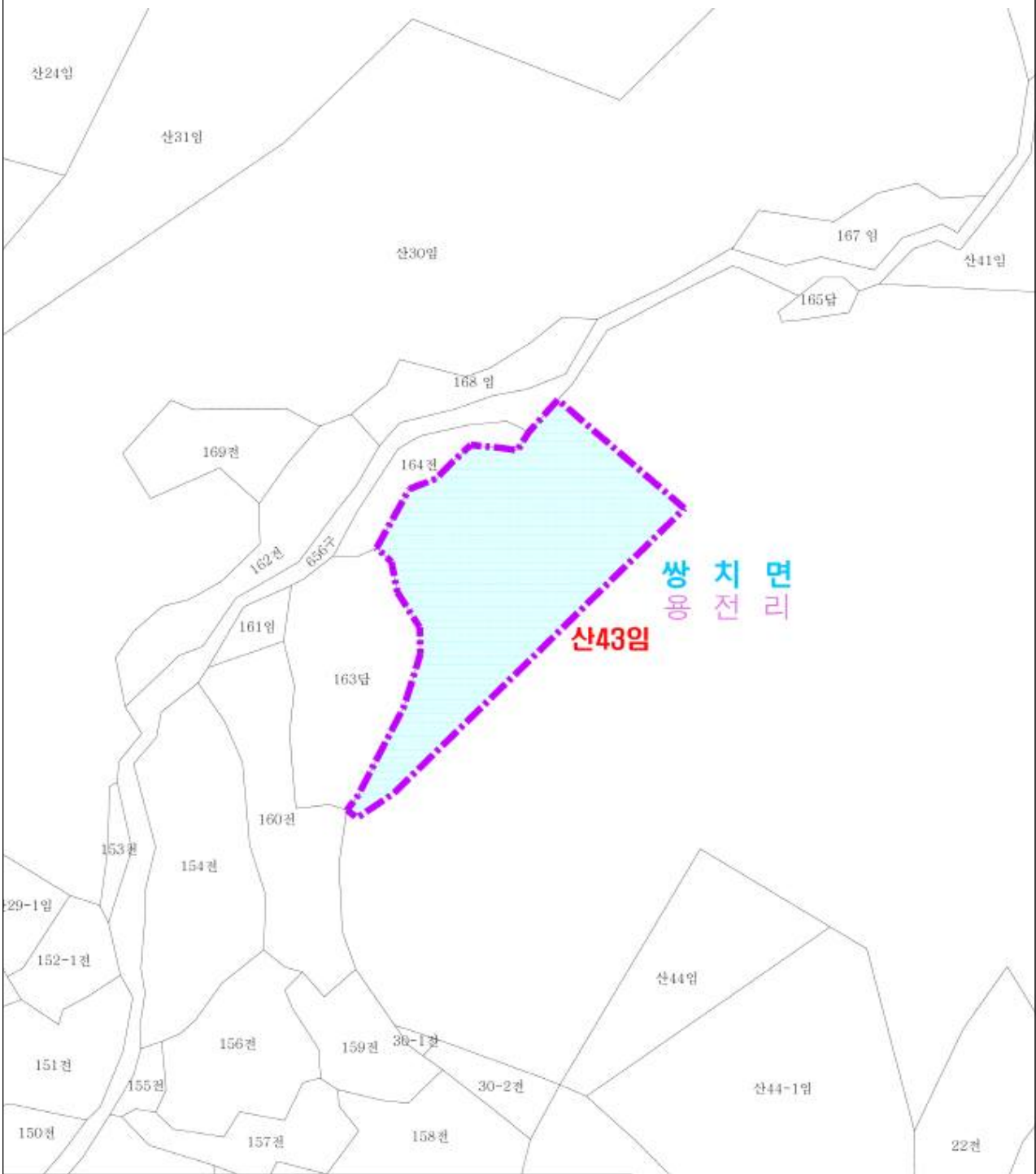
2026년 4월 30일

순창군수

1. 사업의 목적	개간사업(밭작물 재배)	
2. 사업의 위치	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43번지	
3. 사업시행자	성명	전 * *
	주소	순창군 쌍치면 000길 00
4. 지적/시행면적	57,719㎡ / 4,990㎡	
5. 사업소요비용	10,880,000원	
6. 사업기간	2026. 4. 14. ~ 2027. 4. 14.	
7. 사업효과	농가소득 향상	
8. 이의신청	순창군청(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☎063-650-1836)	

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(개간) 지형고시도면

■ 위 치 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43번지



구 적 표 (쌍치 용전 개간)

No	지번	지목	지적면적	신청지	제외지	용도지역	산지현황
1	산43	임	57,719	4,990	52,729	보전관리지역	준보전산지
합계	1필지		57,719	4,990	52,729		

입 법 예 고 문

순창군 공고 제2026 - 472호

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30일

순 창 군 수

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행정안전부 “2026년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” 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인 ‘주민등록번호’ 를 기재하도록 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개인정보 침해사항 정비(안 별지 제5호서식)

3. 의견 제출

가.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관한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[참조 : 환경위생과장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의견과 그 이유)

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하는 곳 : (우)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환경위생과

(☎ 063-650-1712, Fax 650-17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<http://www.sunchang.go.kr>)

라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

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위생과 자원순환 팀장 강정훈(☎063-650-1712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란” 을 “생년월일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		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
[별지 제5호서식]										[별지 제5호서식]																		
유료화장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신 고 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							처리 기간	유료화장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신 고 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							처리 기간									
									3일										3일									
신청인	상호 (명칭)											신청인	상호 (명칭)															
	성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									생년월일															
	주 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설현황	소재지		관리주체										소재지		관리주체													
	관 리 인		(전화번호 :)		설치 년도										관 리 인		(전화번호 :)		설치 년도									
	규 모		부 지 : m ² ,		화장실 면적 : m ²										규 모		부 지 : m ² ,		화장실 면적 : m ²									
시설내역	시 설 내 역	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	시 설 내 역		대변기 수		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	시 설 내 역			
			남자 용	여자 용	장애 인용	성인 용	유아 용	동양 식	서양 식	남자 용	여자 용	장애 인용			성인 용	유아 용	동양 식	서양 식										
	편 의 시 설		세면기		에어 타올 (페이퍼 타올)		환풍기		화장 지		비누		방향 제		편 의 시 설		세면기		에어 타올 (페이퍼 타올)		환풍기		화장 지		비누		방향 제	
유			무	유	무	유	무	유	무	유	무	유	무	유			무											
1회 사용료		원										1회 사용료		원														
「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「순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								
(날인 또는 서명)									신고인	(날인 또는 서명)									신고인									
순창군수귀하										순창군수귀하																		
구비서류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※ 변경신고서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									수수료	구비서류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※ 변경신고서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									수수료									
									없 음										없 음									